



지난 6월7일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한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가 한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.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입법화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조속히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

## 한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방안

건국대 축산대학 교수 정찬길

### 1. 현황

□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,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

#### ○ 원산지 표시방법

- 국내산 쇠고기 : 국내산(한우고기), 국내산(육우고기), 국내산(젖소고기)
- 수입 쇠고기 : 수입산(미국), 수입산(호주)
- 수입 생우(국내사육 6개월 이상/미만) : 국내산(미국)/수입산(호주)

○ 식육거래내역 : 식육의 종류 · 물량 · 원산지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(쇠고기, 돼지고기)

○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법경찰관(390명)이 실시('04:1,660건)

- \* 원산지표시위반(농산물품질관리법)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\* 거래기록 위반(축산물가공처리법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수입 육류의 이용비중이 높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과 음식점 이용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높고 안전성 위협이 지대함

## 2.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손실

- 소비자의 알권리(Consumer's right to know) 충족과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과 막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초래
-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 (total supply chains) 중에서 특히 소비유통의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
-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이 70%대에 이를 전망,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시 가격 마진 3.8배
  - 미국산 쇠고기 사태 5,800원/kg 한우2등급 사태 22,000원/kg('05,02)
  - 수입쇠고기의 70%이상이 음식점 공급 추정 시 천문학적 가격 마진을 소비자가 부담
  - 2003년 쇠고기 수입 293,606톤(1,126,787천달러 CIF)
    - 국내 총소비량 390,185톤으로 수입량 비중 75%
  - 2003년 한국은 쇠고기 6대 수입국
  - 수입 삼겹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가격 마진 1.8배
  - 돼지고기 수입삼겹살 6,000원/kg 국산(육가공) 10,417원/kg
  - 2004년 돼지고기 수입 108,832톤(296,363천달러 CIF)
    - 삼겹살 64,485톤(59.3% 비중)
  - 2005년 4월 현재 76,706톤(237,734천달러 CIF)
  - 2002년 기준 돼지고기 7대 수입국
- 육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불확실성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
  - 육류의 위해성 발생시 효율적인 원산지 추적 불가능
    - 미국에서 BSE 발생 공식보고 시점 이전 수입된 쇠고기가 이미 소비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해
  - 성장촉진 호르몬처리(BST) 처리 수입쇠고기 예상 후유증 소비자 부담
    - EU와 미국 간 BST 처리 쇠고기에 대한 15년 쇠고기 분쟁
- 가격차액으로 발생되는 가격마진과 품질마진으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부담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이며, 이로 인한 한우고기와 국산돼지고기의 소비위축으로 축산농가에 파생적으로 야기되는 경영 불안정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임



### 3. 도입의 필요성

-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
※ 국무회의시(2004.1.12) 대통령 말씀요지 : 비용이 들고 통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
- 특히, 소비자단체 및 축산단체에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
  -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
  -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 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 수취
- ※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, 가짜한우고기(수입고기, 젖소고기 등)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을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 고민
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소비자의 알권리, 식생활 안전,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등 소비자 복지의 보호와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육류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식품위생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

### 4.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의 효과

- 소비자의 알 권리(Consumer's right to know) 총족
- 소비자에게 수입육류와 국내산 육류의 선택 기회 부여
- 저가 수입 육류의 둔갑판매로부터 소비자 보호
- 소비자에 막대한 정보 추가 제공
- 국내산 육류의 수요 증가
  - 생축에 대한 파생수요 증가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
- 저렴한 수입산 육류의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 경제적 손실 방지
- 육류의 품질과 가격에 따른 선택권 부여
- 국산육류시장의 보호
- 국산육류 잠재수요 증진
- 자율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한계
- BSE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 증대

## 5. 육류원산지표시제의 외국 사례

- 프랑스는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200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(행정법 2002-1465, 2002.12.17)
  - 출생·사육·도축 국가 명을 표시하여 게시
- 일본은 쇠고기 이력추적(Traceability) 실시의 일환으로 2004년 12월부터 특정요리(야끼니쿠, 샤부샤부, 스키 야키, 스테이크) 취급 음식점에 대해 실시
  - 특정요리마다 개체식별번호(또는 로트 번호) 표시 및 장부 비치
    - ※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중
- 주요 국가별 소매단계 육류원산지표시 요건
  - 미국, 일본, EU, 캐나다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들이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육류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, 특히 EU와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음식점(restaurant을 포함한 food services)까지도 도입하는 추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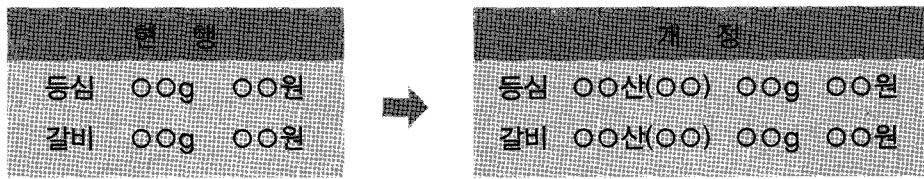
## 6. 추진방법

-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
  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한우고기를 우선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모든 육류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판매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시 도입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 가능
    - 쇠고기의 종류 : 한우고기, 육우고기, 젖소고기
  - 국내외산 가격차가 커 둔갑판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
    - 쇠고기 냉어리 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다음의 요리
      - 구이용(양념육 포함), 샤브샤브, 불고기, 스테이크
- 표시대상 영업장
  -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장
  - 영업장면적 일정규모(예 : 100m<sup>2</sup>) 이상의 영업장



#### □ 원산지 표시방법(메뉴판 등)

- 요리별·부위별 원산지를 중량당 가격과 함께 표시
  - 「식품위생법시행규칙」제42조(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)관련 별표 13 개정, 「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자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규정」제정 고시
  - 원산지 표시방법



\*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되 국내산의 경우 ( )안에 한우, 젖소, 육우를 함께 표시하고, 수입생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유통하는 경우 ( )안에 수입국명 표시

- 국내산(한우), 국내산(젖소), 국내산(육우)/미국산, 호주산/국내산(미국)
- \* 「국내산」 및 「수입산(국가명)」으로 표시할 경우, "국내산 고품질", "수입산 저품질"의 인식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명 존중 필요

#### □ 단속주체 및 원산지 구별방법

-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실시
  -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동단속도 가능
- 원산지 구별방법은 영수증, 육안감정, 유전자 감별법 등 활용
  - 음식점에서도 식육판매업소와 같이 거래내역 1년간 비치 의무화  
(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개정)
  - \* 공급자의 허위기재로 인한 경우 음식점 영업자는 면책
- 유전자감별법 현장 적용 확대에 따른 예산(장비 및 운영비) 지원

## 7. 주요쟁점

### 1) 단속의 실효성 확보문제

원산지에 대한 음식점의 식별능력이 없고, 전국의 음식점 수가 61만 개소에 달해 지도·단속 등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

□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

- 음식점에서의 식육거래 기록·보관을 의무화하면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조사 가능, 보조수단으로는 DNA 감별법을 적극 활용

※ DNA감별법 : 한우·젖소는 100%, 한우·수입육은 95.8% 구별 가능

□ 대형 음식점부터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

- 일정규모(예: 영업장면적 100m<sup>2</sup>) 이상 및 넝어리 고기(구이용, 샤브샤브, 불고기, 스테이크) 취급 음식점으로 한정하면 상당수 축소 전망

□ 초기단계에서는 제도 시행만으로도 自淨기능 기대

□ 단속인력 및 장비 보강, 계도기간(1~2년) 경과 후 시행

- 명예감시원을 감시·신고·단속에 활용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 
(명예감시원 수: 보건복지부 13천명, 농림부 15)

## 2) 통상마찰 가능성

국내외산 구분표시는 수입산에 차별인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WTO의 「내국민 대우」위반 가능성

□ 수입산에 대해 표시방법을 달리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반소지가 있으나

- 동 제도는 국내산, 수입산 모두 동일하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동등한 경쟁기회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

※ 최근 유전자 변형농산물(GMO) 표시 의무제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'알권리'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

□ 과거 WTO쇠고기 패널(2000.6)에서 문제가 된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원산지를 기초로 장소를 분리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경쟁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임

- WTO 쇠고기 패널보고서에서도 소비자 알권리,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장소를 분리하는 것보다 원산지표시제(Labelling)를 권장하고 있음